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295호 2023. 8. 2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12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23-12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2023-12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항만)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38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8

○ 삼척시 공고 제2023-1383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2

공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3-12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21.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258-11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138-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당골길 258-11	20230821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 활용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118-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4156-16 (교동)	20230821	신규 부여	20090710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이	하	여	백	

삼척시 고시 제2023-12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25.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834-7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65, 6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834-7	20230825	신규 부여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직동 36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1길 134 (사직동)	20230825	신규 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 (중앙로분기)
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산288-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산양길 181-38	20230825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 (노경,산양) 복합활용
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경동 151-6, 379-4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경길 90 (도경동)	20230825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기존도로명)
		이	하	여	백	

삼척시 고시 제2023-12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항만)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근덕면 초곡리 20-4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삼 척 시 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항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항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초곡항	지방어항	근덕면 초곡리 20-47번지 일원	20,459	증) 988	21,447	2019. 6.21. (강원도고시 제268호)	계획관리지역, 미지정

■ 항만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초곡항	• 부지 확장 - 면적: 20,459㎡ → 21,447㎡ (증 988㎡)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 매립을 통한 지적 신규등록지(초곡리 20-49, 공부면적 988㎡)의 항만 부지 포함 • 전체 부지 편입면적 재확인·조정 • '초곡항 어촌뉴딜사업' 내용(관광레저 휴게기능: 초곡살롱) 반영

- 항만 조성계획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근덕면 초곡리	20,459	증) 988	21,447	2019. 6. 21.	
변경	가.	기본시설		3,669	증) 659	4,328		
변경	1)	방 파 제	20-39 일원	2,433	증) 637	3,070		
변경	2)	물양장 선양장 선류장 선치장등	20-43 일원	1,236	증) 22	1,258		
변경	나.	기능시설		8,560	감) 67	8,493		
변경	1)	도 로	20-47 일원	4,455	감) 17	4,438		
변경	2)	주 차 장	20-47 일원	2,376	감) 168	2,208		
변경	3)	어구건조·야적장 어업용 창고	20-38 일원	1,141	증) 11	1,152		
변경	4)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	20-38 일원	337	증) 76	413		
변경	5)	해양수산공공시설	20-43 일원	76	증) 29	105		
변경	6)	어항정화시설	20-38 일원	175	증) 2	177		
변경	다.	어항편익시설		6,805	증) 431	7,236		
변경	1)	문화, 복지시설	20-43 일원	98	증) 55	153		
변경	2)	관광레저휴게시설	20-46 일원	6,707	증) 376	7,083		
변경	라.	유 보 지	20-47 일원	1,425	감) 35	1,390		

■ 항만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	기본시설	• 면적 증가: 증 659㎡ - 방파제 637㎡, 물양장 등 22㎡	- 면적산정 착오 정정
나	기능시설	• 면적 감소: 감 67㎡ - 도로 17㎡, 주차장 168㎡ 감소 - 어구건조장 등 11㎡, 수산물유통시설 등 76㎡, 해양수산공공시설 29㎡, 어항정화시설 2㎡ 증가	- 면적산정 착오 정정
다	어항편익시설	• 면적 증가: 증 431㎡ - 문화시설 등 55㎡, 관광레저휴게시설 376㎡ - 신규등록지 면적(988㎡) 포함	- 면적산정 착오 정정 - '초곡항 어촌뉴딜사업' 내용(관광레저휴게기능: 초곡살롱) 반영
라	유 보 지	• 면적 감소: 감 35㎡	- 면적산정 착오 정정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도 및 지형도면: 별도 첨부

라.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3-138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3. 8. 25. ~ 2023. 9. 10. (16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3. 9. 11.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1	나.당사자	성명(명칭)	남기○
		주 소 (대장상주소)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26-16호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30-1 주2 연면적(94.06㎡), 시멘트블록조, 공장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2	나.당사자	성명(명칭)	황진○
		주 소 (대장상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3동 62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430-1 주3 연면적(97.71㎡), 세멘트부럭조, 공장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5.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969

삼척시 공고 제2023 – 1383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삼 척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처분대상

건축주	주소지	미송달 사유	위반건축물 주소	위반내용
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로 3-**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752-1번지	근린생활시설 무단증축 58.04㎡

4. 공고기간 : 2023. 8. 28. ~ 2023. 9. 11. (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2)